

# 양형기준안

---

....

# 살인범죄 양형기준안

---





## [ 적용범위 ]

살인범죄의 양형기준은 살인(형법 제250조 제1항), 존속살해(형법 제250조 제2항), 위 각 범죄의 미수죄를 저지른 성인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제1유형	3년 - 5년	4년 - 6년	5년 - 7년
제2유형	6년 - 9년	8년 - 11년	10년 - 13년
제3유형	8년 - 11년	10년 - 13년	12년 - 15년, 무기 이상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공통	과잉방위, 미필적 고의, 피해자 유발(강함)
		미수	경상
일반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농아자, 자수,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유족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동종 및 특강 누범,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행위	소극가담, 피해자유발(보통)	
	행위자 /기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자백), 범행 후 구호 호송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 (복역 후 10년 미만)

# 제1차 공청회 결과보고

## 1.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이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처단형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상한을 1/2까지 가중한 결과 처단형 범위가 15년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도 있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이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처단형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 2.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에 의한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의한 처단형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 3. 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 범위

‘미수’를 제외한 다른 양형인자에 의하여 정해진 권고형이 살인 제1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량범위의 1/2로, 살인 제2, 3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량범위의 1/3로 감경한다.

## 4.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 [ 유형의 정의 ]

### 1. 제1유형 :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살인

- 제1유형은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살인범행을 의미한다.
-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극심한 생활고로 인한 살인
  - 피해자로부터 장기간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지속적인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한 경우
  - 수차례 실질적인 살해의 위협을 받은 경우(과잉방위 제외)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2. 제2유형 :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

● 제2유형은 제1 또는 제3유형에 속하지 않는 살인범행을 의미한다.

## 3. 제3유형 :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살인

● 제3유형은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살인범행을 의미한다.

●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살해욕의 발로(살인에 대한 희열을 느끼는 경우 등)
- 재산적 탐욕(상속재산 및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살인(교도소 탈주를 위한 교도관 살해, 특정인의 납치를 위한 경호원 살해 등)
- 다른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살인을 한 경우(유일한 증인에 대한 살해 및 고소를 막기 위한 살인 등)
- 돈을 받을 목적으로 청부살인을 한 경우
- 조직폭력 집단의 세력 다툼에 기인한 살인의 경우
- 아무런 이유 없이 무작위로 다른 사람을 살인한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아주 사소한 것에 대한 복수심의 발로, 보복살인 등)

## [ 양형인자의 정의 ]

### 1. 계획적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2.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제1차 공청회 결과보고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던 경우를 의미한다.

## 3. 잔혹한 범행 수법

- 잔인성은 고통의 강도와 시간적 계속성의 면에서 볼 때 사람의 생명을 끊음에 있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피해자에게 가하여 사람을 살해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방화로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
  - 폭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
  - 살해 전 피해자의 신체 일부분을 고의로 손상하는 행위
  - 칼이나 둔기 등 흉기를 사용하여 신체의 급소 등을 수십 차례 찌르거나 가격한 행위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법

## 4. 반성 없음

-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후회나 죄책감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범행을 단순 부인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 5. 피해자 유발

- 범행이 저질렀을 당시 피해자에게도 일정한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다만, 과잉방위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 한함).
  - 피해자에 의하여 범인 또는 친족에게 가해진 폭력이나 성적 학대 등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인의 격분을 유발함으로써 흥분 상태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등
-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함으로써 싸움이 야기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장기간에 걸친 피해자의 가정폭력과 같이 범행 이전부터 상당기간 동안 존재한 귀책사유를 유형 분류단계에서 이미 고려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고려할 수 없다.

## 6. 유족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참회하고,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 [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

### 1. 형량 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 범위는 특별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 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적 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적/기타 인자보다 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적 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적/기타 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 범위에서,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에서,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 범위에서 선고형을 정할 것을 권고한다.

###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 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 살인미수범죄의 집행유예 기준 ]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재범의 위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회 이상의 동종 전과</li> <li>● 계획적 범행</li> <li>●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범</li> <li>●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li>● 피해자 유발(강함)</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상 또는 후유장애</li> <li>● 피해회복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상</li> <li>● 피해자와 합의(합의에 준하는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li> </ul>
일반 참작 사유	재범의 위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지한 반성 없음</li> <li>● 약물중독, 알코올 중독</li> <li>●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형 선고</li> <li>●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li> <li>● 피해자와 전혀 알지 못함</li> <li>● 위험한 물건 휴대</li> <li>● 범행수법이 잔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지한 반성</li> <li>● 피고인이 고령</li> <li>●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음</li> <li>●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li> <li>● 중지미수</li> <li>● 자수</li> <li>● 피해자 유발(보통)</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li> <li>●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li> <li>● 범행 후 구호호송</li> <li>●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li> <li>●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li> </ul>

## [ 복수 집행유예 결정인자의 평가 원칙 ]

- ①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 참작사유는 일반 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② 주요 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긍정사유가 주요 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③ 주요 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부정사유가 주요 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



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④ 위 ② 또는 ③에 해당하나 일반사유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이거나, 위 ② 또는 ③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 뇌물범죄 양형기준안

---





## [ 적용범위 ]

뇌물죄의 양형기준은 수뢰(형법 제129조), 수뢰후 부정처사, 사후수뢰(형법 제131조), 특가법상 수뢰(특가법 제2조 제1항) 및 뇌물공여(형법 제133조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성인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 [ 뇌물수수 ]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6월 - 1년6월	1년 - 3년	1년6월 - 3년6월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6년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3년6월 - 6년	5년 - 7년	6년 - 8년
제4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5년 - 8년	7년 - 10년	9년 - 12년
제5유형 (5억 원 이상)	7년 - 10년	9년 - 12년	11년 이상, 무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요구, 약속에 그친 경우 공무원이 될 자인 경우	수뢰 관련 부정처사,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적극적 요구
	행위자	농아자, (심신미약), 내부비리고발 또는 자수, 수사개시전 뇌물반환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소극가담, 특가법 4조의 준공무원	일부 경합범, 업무 관련성 높음, 뇌물사용용도가 개인용인 경우, 3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행위자	(자백), 반성, 초범	(동종 전과 및) 징계 전력, 3급 이상 고위 공무원

# 제1차 공청회 결과보고

## [ 뇌물공여 ]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6월	4월 - 10월	6월 - 1년6월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6월 - 1년	10월 - 1년6월	1년 - 3년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년 - 2년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제4유형 (1억 원 이상)	2년 - 3년	2년6월 - 3년6월	3년 - 5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약속, 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공무원이 될 자에 대한 증뢰	증뢰 관련 부정처사의 요구 (적극적 증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농아자, (심신미약), 자수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증뢰물 전달, 소극가담, 특가법 4조의 준공무원에 대한 증뢰	일부 경합범, 업무 관련성 높음
	행위자	(자백), 반성, 초범	이종 누범 및 동종 전과



## [공통 원칙]

### 1.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이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처단형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상한을 1/2까지 가중한 결과 처단형 범위가 15년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도 있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이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처단형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 2.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에 의한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의한 처단형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 [양형인자의 정의]

### 1. 뇌물 수수

#### 가. 적극적 요구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함
  - 증뢰자에게 뇌물을 공여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경우
  - 증뢰자에게 뇌물을 공여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인의 직무상 권한 또는 영향력 행사를 통해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 등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가할 것같은 태도를 보인 경우

#### 나. 수사개시 전 뇌물반환

-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뇌물을 증뢰자에게 직접 반환한 경우를 말함

# 제1차 공청회 결과보고

- 다만, 뇌물 반환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는 제외

## 다. 내부비리 고발

- 구조적 비리에 가담해 온 피고인이 범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에서 내부 비리를 고발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된 경우를 말함

## 라. 업무 관련성 높음

- 피고인이 청탁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함
  - 반드시 직급에만 상응하는 것은 아니므로 하위 직급인 경우에도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

## 마. 뇌물사용용도가 개인용인 경우

- 피고인이 유희비나 재산증식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경우를 말함

## 2. 뇌물 공여

### 가.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뇌물을 공여한 경우를 말함

### 나. 증뢰 관련 부정처사의 요구(적극적 증뢰)

- 수뢰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면서 직무에 관한 부정한 행위를 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 업무 관련성 높음

- 청탁 내용에 관해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수뢰자를 대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경우를 말함

##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 1. 형량 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 범위는 특별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 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적 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적/기타 인자보다 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적 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적/기타 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 범위에서,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에서,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 범위에서 선고형을 정할 것을 권고한다.

##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 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 집행유예 기준 ]

### 가. 뇌물수수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극적 요구</li> <li>●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 집행과 관련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등)</li> <li>● 수수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li> </ul>
일반참작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종 징계전력</li> <li>● 장기간의 뇌물수수</li> <li>● 3급 이상 고위공무원</li> <li>● 수뢰 후 부정처사</li> <li>●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li> <li>● 뇌물사용 용도가 개인용인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범</li> <li>● 수사개시전 뇌물반환</li> <li>● 공범으로서 소극가담</li> <li>● 장기간 근무(20년 이상)</li> <li>● 피고인 중병</li> <li>●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li> </ul>

▶ 고려되어서는 안 되는 요소 :

- ① 신분상실 또는 사회적 명예 실추

# 제1차 공청회 결과보고

- ② 부정한 이익의 몰수
- ③ 본건 관련 징계처분

## 나. 뇌물공여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종 전과</li> <li>● 적극적 증뢰</li> <li>● 뇌물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li> <li>● 청탁내용이 부정한 업무집행을 목적으로 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등)</li> <li>●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li> <li>● 소극가담(상사의 지시 등)</li> <li>● 수뢰자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li> </ul>
일반참작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li> <li>● 장기간의 뇌물공여</li> <li>● 3급 이상 고위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li> <li>● 대규모 이익과 관련한 뇌물공여</li> <li>●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범</li> <li>●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li> <li>● 피고인 중병</li> <li>●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li> </ul>

## [복수 집행유예 결정인자의 평가 원칙]

- ①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 참작사유는 일반 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② 주요 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긍정사유가 주요 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③ 주요 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부정사유가 주요 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④ 위 ② 또는 ③에 해당하나 일반사유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이거나, 위 ② 또는 ③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 성범죄 양형기준안

---





## [ 적용범위 ]

성범죄의 양형기준은 강간(형법 제297조), 강제추행(제298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제299조), 강간등 상해·치상(제301조), 강간등 살인·치사(제301조의2), 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 등 (제305조), 강도강간(제339조), 성폭법상 주거침입·절도강간, 강제추행 등(성폭법 제5조 제1항), 특수강도강간, 강제추행 등(제5조 제2항), 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 등(제6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등(제7조),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제8조),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제8조의2), 강간등 상해·치상(제9조), 강간등 살인·치사(제10조), 청소년성보호법상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제7조), 특가법상 강도강간 재범(특가법 제5조의5), 특가법상 누범(특가법 제3조) 및 위 각 범죄의 미수죄(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저지른 성인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1차 공청회 결과보고

##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강간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6년
2	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3년 - 5년	4년 - 6년	5년 - 8년
3	강도강간	5년 - 8년	7년 - 10년	9년 - 13년

- 청소년 강간(위계·위력간음 포함), 친족관계 강간은 1유형에 포섭
  - ▷ 특가(누범)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형량가중 결과가 1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 선택 가능, 이하 같음)
  - ▷ 강도강간에 대한 특가(누범)도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 기본·감경영역 중 2번 감경한 형량범위는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적용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1유형)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극도의 성적수치심 증대, 임신/성병감염, 취약한 피해자, 성폭법 7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윤간(2, 3유형), 성폭법 5조 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3유형)
	행위자 /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합의, 자수	특가(누범), 특가(누범)에 해당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소극가담, 피고인이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해 범행가담	일부 경합범, 계획적 범행, 비난 동기, 동일기회 수회간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7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행위자 /기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반성, 초범	인적 신뢰관계 이용, 특가(누범), 특가(누범)에 해당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복역 후 10년 미만)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강제추행	1년 이하	6월 - 2년	1년6월 - 3년
2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6년
3	특수강도강제추행	5년 - 7년	6년 - 9년	7년 - 11년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친족관계 강제추행은 1유형에 포섭
- 성폭법 제8조의2 제2항 각호의 행위에 의한 강제추행 및 그 상해·치상은 2유형에 포섭
  - ▷ 특가(누범)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 기본·감경영역 중 2번 감경한 형량범위는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적용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1유형)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극도의 성적수치심 증대, 취약한 피해자, 성폭법 7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행위자 /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합의, 자수	특가(누범), 특가(누범)에 해당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소극가담, 피고인이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해 범행가담	일부 경합범, 계획적 범행, 비난 동기,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제추행한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7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행위자 /기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반성, 초범	인적 신뢰관계 이용, 특가(누범), 특가(누범)에 해당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복역 후 10년 미만)

# 제1차 공청회 결과보고

## 다.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강제추행 등/ 의제강간	1년 - 3년	2년 - 4년	3년 - 6년
2	강제 유사성교	3년 - 5년	4년 - 6년	5년 - 8년
3	강간	4년 - 6년	5년 - 7년	6년 - 9년

- 의제강제추행은 1유형에 포섭
- 위계·위력추행은 1유형에, 위계·위력유사성교는 2유형에, 위계·위력간음은 3유형에 포섭
  - ▷ 특가(누범)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 감경·기본영역 중 2년 감경한 형량범위는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적용
  - ▷ 강도강간, 특수강도강제추행의 경우에는 13세 이상 대상 양형기준을 적용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행위가 의제강제추행에 해당 하는 경우(1유형)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극도의 성적수치심 증대, 소아기호증에 의한 경우, 임신/성병감염(1, 3유형), 윤간(1, 3유형)
	행위자 /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합의, 자수	특가(누범), 특가(누범)에 해당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소극가담, 피고인이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해 범행가담	일부 경합범, 계획적 범행, 비난 동기, 성폭범 5조 1항, 6조 또는 7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동일기회 수회간음(1, 3유형)
	행위자 /기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반성, 초범	인적 신뢰관계 이용, 특가(누범), 특가(누범)에 해당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복역 후 10년 미만)



##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3세 이상 상해/치상	일반강제추행	1년6월 - 4년	2년 - 5년	3년 - 6년
		일반강간,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2년 - 4년	3년 - 6년	4년 - 8년
		주거침입등강간 /특수강간	3년 - 6년	4년 - 7년	6년 - 10년
2	13세 미만 상해/치상	강제추행 /의제강간	2년6월 - 4년	3년 - 6년	4년 - 8년
		유사성교행위, 강간	4년 - 7년	5년 - 8년	7년 - 11년

- 양형인자는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양형인자표 중 특별감경사유에 “기본범행이 미수에 그친 경우”를, 특별가중사유에 “중한 상해”를 각 추가하여 해당유형별로 사용함

- ▷ 특강(누범)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 강도강간, 특수강도강제추행의 경우에는 13세 이상 대상 양형기준을 적용

##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강간치사/ 강제추행치사	6년 - 9년	8년 - 11년	10년 - 15년
2	강간살인/ 강제추행살인	11년 - 13년	12년 - 15년, 무기	무기 이상

# 제1차 공청회 결과보고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1 유형), 미필적 살인의 고의(2 유형)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행위자/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합의, 자수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소극가담, 기본행위가 강제추행인 경우	일부 경합범
	행위자/기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반성, 범행 후 구호·호송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복역 후 10년 미만)

## [공통 원칙]

### 1.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이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처단형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상한을 1/2까지 가중한 결과 처단형 범위가 15년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도 있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이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처단형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 2.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에 의한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의한 처단형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 [ 유형의 정의 ]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1) 제1유형(일반 강간)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함(이하, 같음)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폭행·협박으로 부녀를 강간	형법 297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간음	형법 299조
신체장애, 정신상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 이용 간음	성폭법 8조
여자 청소년(19세 미만)을 강간/준강간	청소년성보호법 7조 1항, 3항
여자 청소년(19세 미만)을 위계·위력으로 간음	청소년성보호법 7조 4항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강간/준강간	성폭법 7조 1항, 3항

##### (2)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간 / 특수강간)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범 포함), 특수 절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강간/준강간	성폭법 5조 1항
흥기 등 휴대 또는 2인 이상 합동 강간/준강간	성폭법 6조 1항, 3항

##### (3) 제3유형(강도강간)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강도가 부녀를 강간	형법 339조
특수강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강간/준강간	성폭법 5조 2항

# 제1차 공청회 결과보고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1)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추행	형법 298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추행	형법 299조
신체장애, 정신상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 이용 추행	성폭법 8조
여자 청소년(19세 미만)을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청소년성보호법 7조 2항, 3항
위계·위력으로 여자 청소년(19세 미만)을 추행	청소년성보호법 7조 4항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성폭법 7조 2항, 3항

### (2)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범 포함), 특수절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성폭법 5조 1항
흥기 등 휴대 또는 2인 이상 합동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성폭법 6조 2항, 3항

### (3) 제3유형(특수강도강제추행)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특수강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성폭법 5조 2항

## 다.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1) 제1유형(강제추행 등 / 의제강간)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13세 미만자를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성폭법 8조의2 3항, 4항
13세 미만자를 위계·위력으로 추행	성폭법 8조의2 5항
13세 미만자를 추행	형법 305조
13세 미만 부녀를 간음	형법 305조

(2) 제2유형(강제유사성교)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13세 미만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하거나 13세 미만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성교 행위	성폭법 8조의2 2항, 4항
13세 미만자에 대하여 위계·위력으로 유사 성교 행위	성폭법 8조의2 5항

(3) 제3유형(강간)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13세 미만 부녀를 강간 / 준강간	성폭법 8조의2 1항, 4항
13세 미만 부녀를 위계·위력으로 간음	성폭법 8조의2 5항

▶ 특가(누범), 특강(누범)에 해당되는 경우(해당 범죄에 대하여 공통)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강도강간(미수범 포함)죄로 형을 종료한 후 3 년 내에 재범한 경우	특가법 5조의5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강도강간죄를 범한 경우	특강법 3조

# 제1차 공청회 결과보고

##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제1유형(13세 이상 상해/치상)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강간/준강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형법 301조
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형법 301조
청소년성보호법 7조 1항, 2항, 3항(미수범 포함)의 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형법 301조
성폭법 5조 1항, 6조(미수범 포함)의 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성폭법 9조 1항
성폭법 7조, 8조(미수범 포함)의 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성폭법 9조 2항

### 나. 제2유형(13세 미만 상해/치상)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13세 미만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을 추행(미수범 포함)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형법 305조, 301조
성폭법 8조의2(미수범 포함)의 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성폭법 9조 1항

##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제1유형(강간치사 / 강제추행치사)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강간·준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치사	형법 301조의2
성폭법 6조 ~ 8조(미수범 포함)의 죄를 범한 자가 치사	성폭법 10조 2항
성폭법 8조의2(미수범 포함)의 죄를 범한 자가 치사	성폭법 10조 3항

**나. 제2유형(강간살인 / 강제추행살인)**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강간·준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살해	형법 301조의2
성폭법 5조 ~ 8조, 8조의2(미수범 포함)의 죄를 범한 자가 살해	성폭법 10조 1항

**[ 양형인자의 정의 ]**

**1.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범행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행위가 수반되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매우 큰 경우를 말함
  - 범행 과정을 촬영한 경우
  - 피해자의 자녀, 배우자, 부모 등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성적 유희를 위한 도구를 사용한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임신 / 성병감염**

-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임신하거나 성병에 감염된 경우

# 제1차 공청회 결과보고

## 3.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연령, 신체 또는 정신 장애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던 경우를 말함

예 : 임신한 부녀자로서 피고인으로서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

## 4.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 마약류 기타 약물을 투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인식 및 통제능력을 상실 또는 미약하게 한 다음 범행한 경우

## 5. 소극 가담

- 범행이 주로 다른 공범에 의하여 실행된 경우와 같이 피고인이 수동적인 참여자이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한 경우
- 다만, 관음증에 기인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하는 경우와 같이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성욕 만족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때는 제외됨

## 6. 합의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 다만,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 등에 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또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됨

## 7. 계획적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의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8. 비난받을 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 다른 범행 과정에서 신고를 막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재산상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9. 인적 신뢰관계 이용

- 구성요건적 가중 요소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래와 같은 관계에 있어 상호 신뢰를 이용한 경우를 말함
  - 사제
  - 지인 자녀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10.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중한 상해결과는 “치료 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의 예상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함

## 11.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범행 과정에 피고인이 예상치 못한 요인이 개입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 12. 잔혹한 범행수법

- 잔인성은 고통의 강도와 시간적 계속성의 면에서 볼 때 사람의 생명을 끊음에 있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를 넘어서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피해자에게 가하여 사람을 살해하는 것을 의미함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 방화로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
  - 폭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

# 제1차 공청회 결과보고

- 살해 전 피해자의 신체 일부분을 고의로 손상하는 행위
- 칼이나 둔기 등 흉기를 사용하여 신체의 급소 등을 수십 차례 찌르거나 가격한 행위
- 그밖에 이에 준하는 수법

## [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

### 1. 형량 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 범위는 특별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 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적 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적/기타 인자보다 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은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적 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적/기타 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 범위에서,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에서,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 범위에서 선고형을 정할 것을 권고한다.

###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 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